

제 1315 호

1986. 9. 22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문부
편집인: 공도관리영문부
인쇄인: 서울특별시 종합출판간행소
전화: 731-6111-3
전화: 735-3337

신 기	공보관	간재 (영문부)	공보제작
접수일자	1986. 9. 22	로도제작	
처리과	간인기		

시 보

자 례

- ◎ 공문시행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제 99 회 추록 배부 3
 - 물품관리 건관 소요도회 4
- ◎ 조 례
 - 제 2103 호: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 5
 - 제 2104 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 6
 - 제 2105 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7
 - 제 2106 호: 서울시립대학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8

(이면계속)

안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107 호 :	서울특별시 보육환경연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8
제 2108 호 :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8
제 2109 호 :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9
제 2110 호 :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9
제 2111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9
제 2112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10
제 2113 호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설치 조례	11

◎ 규 칙

제 2149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12
제 2150 호 :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	12
제 2151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	13

◎ 공 고

제 520 호 :	국가기술자격 검사 공고	20
제 524 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일람	21
제 526 호 :	공공하수도 사용기서 공고 및 관계도면 공람	22

◎ 구 공 고

관악 제 92 호 :	동관인 개자사용 승인 공고	25
-------------	----------------	----

◎ 예 규

제 483 호 :	서울특별시 농지건용조정 심의위원회 규정	27
-----------	-----------------------	----

◎ 사 령

공 문 시 행

서 울 특 별 시

법무 02142- 924

(731-6157)

1986. 9. 22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9 회 추록 배부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9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수령 즉시 정리하여 법령집 발송 차질 없도록 할 것.

가. 배부기간 : 86. 9. 22 ~ 9. 30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 본 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각과 본임물품 출납원 인장날인 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운송배부

2. 대본 보유부서는 가계정리 상태를 점검하여 미정권된 수록을
제 99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이 :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관 1, 서과 1-5, 9, 10, 16, 18, 19, 21, 23-32, 34-37, 39, 43, 44, 46-50,
525, 53, 59-65, 서구 1-17, 서보 1-7, 10, 13, 15, 서 05, 06, 08-11, 20,
23, 34, 42, 56.

시 보 계 재

물품관리전환 소요 조희

'86 정기 재물조사시 직출된 별첨 불용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 1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을 조희하오니 회망부서에서는 86.9.30 한 관리전환 요청(기획담당관)하시기 바라며 관리전환 요청이 없으려는 소요가 없는것으로 처리 하겠읍니다.

관리전환 대상물품 명세서

물품분류명	품명	물품소재	규격	수량	장부가액	물품상태	회계명	비고
7110-020	좌일링	기회	4 단	1 개	13,750	불량	일반	
2300	캐비넷	담당관실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2103 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지방공무원정원표가, 일반회계중 5급 정원내용중 "의무 또는 약무직 1"과 "의무 또는 간호직 1"을 삭제하고 보건의직 "1"을 "3"으로하며 16급 정원내용중 "약무직 2"와 "간호직 2"를 삭제하고 보건의직 "6"을 "10"으로 하며, 7급정원내용중 "약무직 3"과 "간호직 5"를 삭제하고 보건의직 "6"을 "14"로하며, 9급정원내용중 "간호직 1"을 삭제하고 "보건의직 1"을 신설하며 기능직정원 "15"를 "19"로하고 정원내용중 "6등급:기계장"을 신설하고 7등급 기계장 "3"을 "5"로하며, 고용직정원 "348"을 "374"로하고 정원내용중 청부 "48"을 "51"로 기계공 "14"를 "15"로 전공 "16"을 "17"로 타자원 "68"을 "69"로 운전사 "110"을 "111"로 잠무원 "4"를 "16"으로하고

"관리원 7"을 신설하며, 합계란정원 "1,650"를 "1,680"로 한다. (별표 1)

나. 수도특별회계표 중 7급정원 "16"을 "17"로 하고 정원내용중 호공직 "1"을 "2"로하며 8급정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8	급	1	화공직 1
합계단정원 "85"를 "87"로 한다. (별표 1-2) 경찰국 지방공무원정원표중 호공직 정원내용중 타자원 "32"를 "38"로 운전원 "38"을 "39"로 잠무원 "36"을 "37"로 기계공 "32"를 "33"으로 청부 "14"를 "15"로 전공 "13"을 "11"로 교통순시원 "222"를 "214"로 한다.			
(별표 2) 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일반회계중 9급정원 "928"을 "929"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을 신설하며, 7급정원 "1,234"를 "1,235"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854"를 "855"로 하며, 8급정원 내용중 농림직 "44"를 "45"로 하고 "간호직 1"을 신설하며, 9급정원 "1,761"을 "1,762"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22"를 "1,123"으로 하고 전거직 "1"을 "9"로 하며, 기능직정원 "94"를 "119"로 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 전거직 "42"를 "57"로 하며, 고용직정원 "1,912"를 "1,93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323"을 "324"로 전공 "267"을 "277"로 기계공			

<p>“66”을 “67”로 정원 “32”를 “33”으로 감시원 “470”을 “472”로 첨부 “178”을 “180”으로 관리원 “27”을 “28”로 하며, 합계란 정원 “8,125”를 “8,173”으로 한다.</p> <p>(별표 3)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9급 직급란 다음에 의 료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중(1인 214명)의 준과 현원이 있 는 현원은 정원과 일치 될까 하는데 그 초과 현원에 상응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104 호</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중 개정조례</p>
<p>직 급</p>	<p>정 원</p>	<p>정원내용</p>
<p>의 료 직</p>	<p>2</p>	<p>간호원 2</p>
<p>7급정원 “2”를 “1”로 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 1”을 삭제하 며, 8급정원 “6”을 “5”로 하 고 정원내용중 “간호직 1”을 삭 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교용직 공무원 정원(경찰직 교용</p>		<p>서울특별시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근로자후생시설 명칭, (별표 2-2)</p> <p>나. 부녀복지관, (별표 2-3)</p> <p>다. 근로청소년회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u>근로자후생시설명칭</u></p>		
<p>시 직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구로부녀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 서울특별시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년회관 		<p>위 탁 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립 남부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립 공단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종합복지관
<p>(별표 2-2)</p> <p>나. 부녀복지관</p>		
<p>직 급</p>	<p>정 원</p>	<p>정 원 내 용</p>
<p>5 급</p>	<p>2</p>	<p>행정직 2</p>
<p>6 급</p>	<p>4</p>	<p>행정직 4</p>
<p>7 급</p>	<p>4</p>	<p>행정직 4</p>

직 급	정원	정 원 내 용
8 급	3	행정직 3
9 급	2	행정직 2
별정직	39	· 7급상당 16 (훈련교사 14, 영양사 2) · 8급상당 23 (훈련교사 17, 부녀상담원 4, 유아교사 2)
기능직	2	7등급 2 (기적장 1, 전기장 1)
고용직	37	타자원 2, 전공 3, 기계공 2, 수위 5, 청부 7, 잡무원 8, 전달부 2, 운전원 2, 관리원 2, 감사원 2, 교도원 2
합 계	93	
(별표 2 - 3)		
다. 근로청소년회관		
직 급	정원	정 원 내 용
5 급	2	행정직 2
6 급	4	행정직 4
7 급	4	행정직 4
8 급	1	행정직 1
9 급	9	행정직 8, 보전직 1
별정직	19	· 6급상당 2 (상담실장) · 7급상당 17 (지도교관 11, 영양사 2, 상담원 4)
고용직	30	타자원 2, 운전원 2, 전공 2, 기계공 2, 잡무원 1, 청부 3, 수위 6, 미용사 4, 이용사 2, 감사원 2
합 계	69	
<p>◎ 서울특별시조례제 2105 호</p> <p>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p> <p>서울특별시조례제 2105 호</p> <p>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지령부(이하 "지령부"라 함)를 설치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정원내용중 7등급에 "기계공 2"를 신설하며 고용직 정원 "87"을 "87"로 하고 정원내용중 "원 "45"를 "46"으로 하며, 관리 정원 "1,172"를 "1,174"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조례제 2106 호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7급 정원 "15"를 "1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2"를 "14"로 하며, 9급정원 "13"을 "1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3"을 "11"로 하며, 별정직 정원 "5"를 "7"로 하고 정원내용중 7급 상당 "1"을 "3"으로 하고 팔호안에 "자료조사원 2"를 신설하며 고용직 정원 "43"를 "5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3"을 "4"로 하며 합계란 정원 "121" "12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107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직

정원 "19"를 "2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운전원 "7"을 "8"로 하며, 합계란 정원 "176"을 "17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108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7급정원 "14"를 "15"로 하고 정원내용에 "동립직 1"을 신설하며, 별정직 정원 "11"을 "12"로 하고 정원내용중의 8급상당 "5"를 "6"으로 하고 팔호안에 "영사조정 기사 1"을 신설하며, 고용직 정원 "173"을 "178"로 하고 정원내용중 기계공 "21"을 "22"로 정원 "4"를 "5"로 잡무원 "22"를 "24"로 정부 "6"을 "7"로 하며, 합계란 정원 "236"을 "24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09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원관리사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 7급정원 내용중에 보목직 "2"를 "1"로 하고 "전기직1"을 신설하며
- 8급정원 내용중에 농림직 "3"을 "2"로 하고 "건축직1"을 신설하며 9급정원 "12"를 "1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6"으로 하며, 고용직 정원 "82"를 "8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정부 "10"을 "9"로 타자원 "2"를 "3"으로 원정 "18"을 "16"으로 하며 합계란 정원 "118"을 "1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10 호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7급 정원 "2"를 "3"으로 하고 정원내

용에 "전기직1"을 신설하며, 9급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기능직	2	7등급2(기체장1, 전기장1)

합계란 정원 "47"을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11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8급 정원 "29"를 "3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9"를 "20"으로 하며, 9급정원 "40"을 "4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2"를 "13"으로 하며 의료직 정원 "348"을 "349"로 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원 "315"를 "316"으로 하며, 별정직정원 "22"를 "23"으로 하고 정원내용에 "6급상당1(방사선 안전관리기사)"을 신설하며, 고용직 정원 "274"를 "28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사무원 "75"를 "83"으로 정부 "24"를 "25"로 하며 합계란 정원 "768"을 "781"로 한다.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제 2112 호</p> <p>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 개정 조례</p> <p>서울특별시소방서 설치조례를 다음</p>		<p>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및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 표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p>		
구 분	정 원	정 원 내 용
소 방 직	2,400	소방정 12, 소방령 24, 소방경 61, 소방위 82, 소방장 241 소방교 470, 소방사 1,510
고 공 직	138	타자원 16, 행정보조원 12, 청부 24, 기계공 17, 사환 69
합 계	2,538	
<p>(별표 2)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p>		
명 칭	관 할 구 역	
종로소방서	중구, 종로구 및 서대문구 일부	
중부소방서	중구, 종로구 및 동대문구 일부	
성동소방서	성동구 일원	
용산소방서	용산구 일원 및 마포구 일부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 일부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일원 및 구로구 일부	
북부소방서	성북구 및 도봉구 일원	
서부소방서	은평구 일원 및 서대문구, 마포구 일부	
강남소방서	강남구 일부	
남부소방서	관악구, 동작구 일원 및 강남구 일부	
강서소방서	강서구 일원 및 구로구 일부	
강동소방서	강동구 일원	

◎서울특별시조례제 2113 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설치)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와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집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위치) 소방학교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3 조 (교장) ①소방학교에 교장 1 인을 두고, 교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학교장은 시장의 영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하부조직) 소방학교에 서무과와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 6 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운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다른과의 소관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7 조 (교학과) ①교학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임교원의 운용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교내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강사초빙 및 섭외관리
8.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9. 시험의 출제 및 채점
10.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②교학과에 강의와 소방에 관한 연구 및 교재집필을 위하여 전임교관을 둔다.

제 8 조 (시행규칙) 소방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 설치조례(제정 1983.7.18 조례 제 1789 호)는 이를 제지한다.

(별표 3)

소방공무원정원표

계급별	정원	정원	내용
소방경	1		
소방형	2		
소방경	10		
소방위	5		
소방장	4		
소방교	4		
소방사	3		
교용원	8		타자원 1, 행정보조원 1, 청부 1, 기계공 1, 참무원(취사) 2, 수위 2
합계	37		

규칙

◎서울특별시규칙제 2149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6조 (의약과) 제 1항중 "의약계장은 지방의무기과 또는 지방약무기과로"를 "의약계장은 지방보건기과로"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의무기과 또는 지방간호기과로"를 "가족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 2150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운영과) 제 2항제 1호중 "아" "자"목을 "차" "카"목으로 하고 "야"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아시아공원 유지관리
 자. 각종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물관리 포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규칙제 2151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소방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로소방서	세종로소방관 파출소	종로구수송동 146-2	종로구중 중학동, 수송동, 결사동, 관훈동, 청신동, 공평동, 종로1가, 석림동 중구중 북청동, 소공동, 태성로2가, 남대문로1, 2, 3, 4, 5가, 서소문동, 경동, 순화동, 의주 로1, 2가, 중림동, 만리동1, 2가, 불래동1, 2가, 회 현동1, 2가, 남창동, 우교동, 다동, 태성로 1가, 을지로1, 2가, 삼각동, 수하동, 강교 동, 수표동, 명동1, 2가, 충무로1, 2가, 저동1가, 남산동1, 2, 3가
	신교소방관 파출소	종로구신교동 70-2	종로구중 구기동, 명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청운동, 신교동, 조계동, 궁정동, 창성동, 동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무악동, 계부동, 필운동, 내자동, 사직동, 동의동, 적선동, 교남동, 영동, 충원동, 홍파동, 교북동, 행촌동, 도림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1, 2가, 세종로동
	종로소방관 파출소	종로구묘동 59-5	종로구중 팔판동, 삼청동, 안국동, 소격동, 학동, 사 간동, 용현동, 가회동, 재동, 계동, 원서동, 관동동, 운니동, 경운동, 익선동, 낙원동,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사동, 종로 2가, 관철동, 훈정동, 봉익동, 묘동, 돈의동, 종로 3가, 관수동, 장사동, 의릉동
	서대문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미군동 155	서대문구중 현저동, 병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중 정로 1, 2, 3가, 합동, 미군동, 북아현동
	연건소방관 파출소	종로구연건동 34-1	종로구중 예화동, 명륜동 1, 2, 3, 4가, 연건동, 동송 동, 원남동, 인의동, 예지동, 연희동, 효계동 종로 4가, 종로 5가중 80, 85, 88, 89, 91, 93-95, 97, 98, 100, 102-104, 110, 113, 115, 117, 119-122, 124, 138, 395, 396 번지
	청와대소방관 출장소	종로구세종로 1번지	종로구중 세종로 1번지
중부소방서	무학소방관 파출소	중구무학동 43-7	중로구중 찬신동, 송인동 중구중 황학동, 홍인동, 무학동, 신당동, 장충동 1가 장충동 2가
	을지로소방관	중구을지로 7가 1	중구중 우교동, 방산동, 을지로 5, 6, 7가, 오잠동, 예관동, 중무로 5가, 광희동 1, 2가, 쌍림동, 북정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 6가, 종로 5 가(종로 5가중 80, 85, 88, 89, 91, 93-95, 97, 98, 100, 102-104, 110, 113, 115, 117, 119-122, 124, 138, 395, 396 번지 제외)
	용두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용두동 112-4	동대문구중 신일동, 용두동(용두제 2동) 계기동(계기제 2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무로소방관 파출소	중구충무로3가 40-6	중구중 입장동, 산림동, 을지로3, 4가, 지동2가, 초동, 인현동1, 2가, 충무로3, 4가, 필동1 가, 3가, 남학동, 주자동, 예장동
성동소방서	구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구의동 253-23	성동구중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보진동
	성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성정동 81-8	성동구중 성수1가동, 성수2가동, 화양동, 송정동
	능동소방관 파출소	성동구능동 316-3	성동구중 능동, 근치동, 중곡동
	행당소방관 파출소	성동구도선동 35	성동구중 화랑신리동, 상왕십리동, 마장동, 홍익동, 도 선동, 행당동, 사근동, 용담동
	금호소방관 파출소	성동구금호동 1가179-3	성동구중 용봉동, 옥수동, 금호동1, 2, 3, 4가
용산소방서	한강로소방관 파출소	용산구한강로 2가2-89	용산구중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갈월동, 효창동, 원효로1가, 원효로2가, 한 강로1가, 한강로2가, 문배동, 신계동, 남정 동, 용산동3가, 용산동1가, 용산동5가, 용 산동6가, 서빙고동
	이태원소방관 파출소	용산구이태원동 123-13	용산구중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주성동
	후암소방관 파출소	용산구후암동 244-54	용산구중 도동1가, 도동2가, 동자동, 후암동, 용산동 1가, 용산동2가
	이촌소방관 파출소	용산구이촌동 212-3	용산구중 도원동, 송문동, 청암동, 산청동, 신장동, 원 효로3가, 원효로4가, 한강로3가, 이촌동
	도화소방관 파출소	마포구도화동 180-6	마포구중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흥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신수동 103-1	보정동, 마포동, 염리동, 마포구중 대흥동, 노교산동, 신수동, 구수동, 전석동, 찰천동, 상수동, 하수동, 하중동, 신정동
	서교소방관 파출소	마포구서교동 394-42	마포구중 음교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 망원동(망 원제 1동), 달인동
동대문소방서	장안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장안동 434	동대문구중 장안동, 답십리동(답십리제 1, 2, 4, 5동), 전농동(전농제 3, 4동)
	청량리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2-4	동대문구중 청량리동, 회기동, 휘정동, 이문동, 제기동 (제기제 1동), 용무동(용무제 1동), 전농 동(전농제 1, 2동), 답십리동(답십리제 3동)
	중화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중화동 303-7	동대문구중 삼봉동, 중화동, 무동
	면목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면목동 727	동대문구중 면목동
	망우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망우동 364-20	동대문구중 망우동, 신내동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00	영등포구중 영등포동, 영등포동 1가, 영등포동 2가, 영등 포동 3가, 영등포동 4가, 영등포동 5가, 영등 포동 6가, 영등포동 7가, 영등포동 8가, 문래 동 1가, 문래동 2가, 문래동 3가, 문래동 4가, 문래동 5가, 문래동 6가, 도림동, 신길동(신 길제 1동, 신길제 2동, 신길제 3동, 신길제 4 동, 신길제 7동)
	구로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구로동 409-60	구로구중 신도림동, 구로동(구로 3동 1123-1 호부터 1133-9호, 170-3 호부터 766-4 호제외)
	시흥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독산동 1030	구로구중 독산동, 시흥동, 구로동(구로 3동 1123-1 호부터 1133-9호)
	여의도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48-2	영등포구중 여의도동

구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당산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당산 동 6 가 339	영등포구중 당산동 1 가, 당산동 2 가, 당산동 3 가, 당산 동 4 가, 당산동 5 가, 당산동 6 가, 양평동 1 가, 양평동 2 가, 양평동 3 가, 양평동 4 가, 양평동 5 가, 양평동 6 가, 양화동, 당산동
	공단소방관 출장소	구로구구로동 188	구로구중 가리봉동, 구로동 (구로 3 동 170-3 호부터 766-4 호)
	대림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대림 1 동 906-133	영등포구중 신길동 (신길제 5 동, 신길제 5 동), 대림동
북부소방서	중암소방관 파출소	성북구중암동 3-72	성북구중 중암동, 상월곡동, 회현동, 돈암동 (돈암 제 1 동), 안암동 1 가, 안암동 2 가, 안암동 3 가, 안암동 4 가, 안암동 5 가
	문학소방관 파출소	성북구삼선동 4 가 349-1	성북구중 성북동, 성북동 1 가, 풍소문동 1, 2, 3, 4, 5, 6, 7 가, 삼선동 1, 2, 3, 4, 5 가, 보문동 1, 2, 3, 4, 5, 6, 7 가, 돈암동 (돈암제 2 동)
	길동소방관 파출소	성북구길음동 1078-2	성북구중 길동, 길음동
	상동소방관 파출소	도봉구방학동 653-4	도봉구중 강동, 방학동, 도봉동, 방문동 (방문제 2 동)
	미아소방관 파출소	도봉구미아동 327-2	도봉구중 미아동, 수유동 (수유제 1 동)
	상계소방관 파출소	도봉구상계동 197-9	도봉구중 상계동, 중계동
	장곡소방관 파출소	성북구장위동 34	성북구중 : 장위동, 신계동 (신계제 1 동) 도봉구중 : 칠계동, 번동 (번동제 1 동)
	우이소방관 파출소	도봉구수유동 605-347	도봉구중 우이동, 수유동 (수유제 2 동, 수유제 3 동, 수유제 4 동, 수유제 5 동), 방문동 (방문제 1 동, 방문제 3 동), 번동 (번동제 1 동)
	공릉소방관 파출소	도봉구공릉동 556-4	도봉구중 공릉동, 하계동
	서부소방서	불광소방관 파출소	은평구북불광 48-5

서	별	칭	위	치	관	한	구	역
					용암동,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언회소방관	서대문구연회동	서대문구중	81-10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대현동, 창천동, 연회동			
	북가좌소방관	서대문구북가좌동 333-9	서대문구중	3-4	북가좌동, 남가좌동, 은평구중: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			
	갈현소방관	은평구갈현동	은평구중	3-4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화발동, 갈현동, 불광동(불광제 2, 3동)			
	성산소방관	마포구성동	마포구중	64-13	망원동(망원제 2동), 정산동, 중동, 상암동			
강남소방서	삼성소방관	강남구삼성동	강남구중	171-3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 개포동, 자곡동, 수서동, 율현동, 세곡동			
	영동소방관	강남구논현동	강남구중	92-1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잠원동, 논현동(145-152, 154-156, 159, 896-899, 915-932, 956-970, 972-975, 1007-1013번지) 학동(900-914, 933-936, 938, 940-945, 950-955, 977-985, 988-991, 993-1007, 번지)			
	서초소방관	강남구서초동	강남구중	478-1	서초동, 반포동(반포제 1, 3동)			
	역삼소방관	강남구역삼동	강남구중	771-2	역삼동, 도곡동, 논현동(95, 99, 101-112, 114-136, 138-144, 484-498, 1015-1016, 1039-1056, 1058-1059번지) 학동(499-519, 1017-1025, 1027-1029, 1031-1038, 1060-1087, 1089-1091번지)			
	양재소방관	강남구개포구역	강남구중	225-1	양재동, 포이동, 우면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남부소방서	반포소방관 파출소	강남구반포동 190-2	강남구중 : 방배동 (방배본동, 방배제 1동), 반포동 (반포본동, 반포제 2동) 동작구중 : 동작동
	노량진소방관 파출소	동작구노량진 1동 153-18	동작구중 흑석동,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상도제 1동)
	사당소방관 파출소	강남구방배동 733-1	동작구중 : 방배동 강남구중 : 방배동 (방배제 2동) 관악구중 : 남산 6
	신림소방관 파출소	관악구신림5동 1444-21	관악구중 신림동 (신림본동, 신림제 1동, 신림제 3동, 신림제 4동, 신림제 5동, 신림제 6동, 신림 제 7동, 신림제 8동, 신림제 10동, 신림제 11동), 봉천동 (봉천본동, 봉천제 1동)
	봉천소방관 파출소	관악구봉천4동 38-	관악구중 봉천동 (봉천제 2동, 봉천제 3동, 봉천제 4 동, 봉천제 5동, 봉천제 6동, 봉천제 7동, 봉천제 8동, 봉천제 9동, 봉천제 10동), 신림동 (신림제 2동, 신림제 9동)
	상도소방관 파출소	동작구상도동 324-21	동작구중 상도동 (상도2,3,4동), 대방동, 신대방동
강서소방서	등촌소방관 파출소	강서구등촌동 840-2	강서구중 : 목동,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마곡동, 방화동, 계화동
	화곡소방관 파출소	강서구화곡동 611-8	강서구중 화곡동, 신원동 (신원제 1동, 신원제 3동)
	공향소방관 파출소	강서구내발산동 817-1	강서구중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향동, 내발산동 오외동
	오류소방관 파출소	구로구오류동 213-30	구로구중 고척동, 개봉동, 궁동, 오류동, 관수동, 천왕동, 양동
	신정소방관 파출소	강서구신정동 1191-4	강서구중 신정동, 신원동 (신원제 2동)

서 번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동소방지	성내소방관 파출소	강동구성내동 541-39	강동구중 성내동, 둔촌동, 이동, 길동, 성내동(99-3, 108-1, 321, 320-13, 15, 7, 9, 319-33, 327, 328 번지 제외)
	잠실소방관 파출소	강동구잠실동 44-5	강동구중 잠실동(잠실제 3'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가락동
	천호소방관 파출소	강동구성내동 302-13	강동구중 풍납동, 천호동, 암사동, 성내 1동(99-3, 108-1, 321, 320-13, 7, 9, 15, 319-33, 327, 328 번지)
	기여소방관 파출소	강동구마천동 307-11	강동구중 기여동, 마천동, 문정동, 장지동, 오금동
	고덕소방관 파출소	강동구고덕동 494	강동구중 상일동, 하일동, 고덕동, 명일동
	종합운동장 소방관 파출소	강동구잠실동 10	강동구중 잠실동(잠실제 1, 2, 5 동), 신천동(잠실제 4, 6 동)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520 호

국가기술자격정지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 및 동법시

행령 제 33 조의 규정제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한다.

1986.9.22

서울특별시장

성 명	박 명 성	전 종 속
생 년 월 일	56.12.15	56.12.18
자격종목및등급	열관리 기능사 2 급	과 동
취 득 일 자	82. 2.28	86. 5.19
등 록 일 자	82. 3. 2	86. 5.20
등 록 번 호	S2410081348	86402020871
정 지 사 유	국가기술자격법 제 11 조 위반	과 동
자격정지기간	86.9.20 ~ 87.3.19	86.9.20 ~ 87.9.19

◎서울특별시공고제 524 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결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6의 1 인에 대하여 전원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 17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86. 9. 2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정량리변전소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정기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87 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서울동부지역의 과부하해소와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변압기 용량 154/23KV, 45/60MVA × 2 대의 변전소를 건설코자 함.

라. 사업시행기간 : 86.8-88.7

마.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휘경동 116-1
면적 : 3,419 ㎡

바.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명칭 : 별첨

사. 토지 및 건물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 별첨도면표지와 같음 (도면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 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주소·성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비고
			원지적	천입지역		
동대문구 휘경동	116-1	대	3,419	3,419	중구남대문로 서울신협 2가 10-1 은행주	

수용또는사용할지장건물의 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주소·성명

소재지	지 번	지장건물	수량	용 도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비고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동대문구 휘경동	116-1	건 물	1 동	주택	56.20	동대문구휘경동 동명정답주 116 동 입 주 상동구천호동 다산개발주 397-56 가압류 중구남대문로 서울신협 2가 10-1 은행주	근저당	

◎ 서울특별시공고제 526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도봉구청 인가 (토목 : 30350-(86.3.17) 호로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한 하수도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

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6. 9. 22.
서울특별시장

공 고 및 공 람 개 요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월일	배 수 구 역	구 별
1	도봉구공릉1동 379 주변	D= 450%, L= 532.5 m D= 600%, L= 72.5 m D= 700%, L= 85 m D= 800%, L= 190 m D= 900%, L= 77.5 m D= 1,000%, L= 155 m D= 1,100%, L= 200 m D= 1,200%, L= 80 m	86. 7. 8	중 략	관류식
2	도봉구상계동 86-1-140	D= 600%, L= 229 m	86. 4. 14	"	"
3	도봉구쌍문동 81번지일대	D= 450%, L= 722.5 m	86. 6. 5	"	"
4	도봉구수유동 370-4-526 -42 간의 3 개소	D= 350%, L= 70 m D= 450%, L= 360 m D= 600%, L= 232.5 m D= 1,000%, L= 160 m D= 1,100%, L= 110 m 암거 (1.0 m × 1.0 m - 1 편) L= 130 m	86. 7. 25	"	"
5	도봉구공릉동 312 의 3 개소	D= 450%, L= 262.5 m 암거 (1.5 m × 1.5 m - 1 편) L= 114 m	86. 6. 24	"	"

연 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 수 구 역	구 별
6	도봉구 강문동 294 외 3 개소	D = 450 %, L = 392.5 m D = 600 %, L = 105 m	86. 6. 11	중 량	합류식
7	" 미아동 791 주변	D = 450 %, L = 60 m D = 800 %, L = 160 m	86. 6. 14	"	"
8	" " 65-5 번지	D = 600 %, L = 50 m	86. 6. 30	"	"
9	" 번동 365, 367 번지	D = 450 %, L = 78 m D = 600 %, L = 265 m	86. 6. 30	"	"
10	" 창동 481-4-484-7 외 2 개소	D = 450 %, L = 399 m D = 900 %, L = 145 m		"	"
11	도봉구 상계동 95 번지의 9 개소	D = 450 %, L = 1,062.5 m D = 600 %, L = 137.5 m D = 800 %, L = 47.5 m	86. 6. 15	"	"
12	도봉구 미아동 233 외 3 개소	D = 450 %, L = 447.5 m D = 600 %, L = 274.5 m	86. 7. 3	"	"
13	" " 300 외 5 개소	D = 350 %, L = 35 m D = 400 %, L = 205 m D = 450 %, L = 269 m D = 600 %, L = 39 m D = 300 %, L = 544 m	86. 6. 14	청 계	"
14	" 도봉동 607, 608 외 6 개소	D = 450 %, L = 19.5 m D = 800 %, L = 192.5 m D = 900 %, L = 152.5 m 압거 (3.0 × 2.0 - 1 현) L = 19.5 m	86. 6. 7	중 량	"
15	도봉구 중계동 154, 172 외 1 개소	D = 450 %, L = 19.5 m D = 500 %, L = 85 m D = 600 %, L = 105 m D = 700 %, L = 17 m D = 800 %, L = 132.5 m	86. 6. 3	"	"
16	도봉구 방학동 688 번지	D = 600 %, L = 195 m	86. 6. 17	"	"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 수 구 역	구 별
17	도봉구수유동 386-268-197 -14 간	D = 450 %, L = 75 m	86. 7. 21	중 량	합류식
18	도봉구미아동 645-1264	D = 800 %, L = 72.5 m D = 900 L = 60 m	86. 7. 30	"	"
19	도봉구상계동 387-18-181 -4 의 1 개소	D = 450 %, L = 350 m	86. 5. 31	중 량	"
20	도봉구합계 1 동 58 의 2 개소	D = 450 %, L = 190 m D = 600 %, L = 545 m	86. 6. 21	"	"
21	도봉구수유 2 동 536-4 19 의 1 개소	D = 450 %, L = 25 m D = 600 %, L = 55 m	86. 8. 10	"	"
22	도봉구수유동가오천중류	D = 450 %, L = 892.5 m 암거 (3.0 × 2.5 1.5 - 2 연) L = 375 m	86. 5. 31	"	"
23	" 도봉동 623-625	D = 450 %, L = 125 m D = 600 %, L = 252.5 m	86. 4. 15	"	"
24	" 수유동 486-45 605-446 간	암거 (2.0 × 2.0 - 2 연) L = 402 m	86. 6. 31	"	"
25	도봉구중계동산 104 번째	D = 450 %, L = 320 m	86. 6. 10	"	"
26	" 미아 4 동 3-584 의 4 개소	D = 450 %, L = 442.5 m D = 900 %, L = 90 m	85. 6. 12	"	"
27	도봉구창동 581 주변	D = 350 %, L = 120 m	85. 12. 7	"	"
28	" 우이동 124-117 간	D = 450 %, L = 202.5 m	85. 12. 1	"	"
29	" 쌍문동 390-401	D = 450 %, L = 35 m	85. 6. 30	"	"
30	" 미아 8 동 374 번째	D = 800 %, L = 137.5 m	85. 9. 4	침 계	"
31	" 미아 8 동 300 의 3 개소	D = 350 %, L = 372.5 m D = 450 %, L = 50 m	85. 7. 25	"	"
32	도봉구공릉동 503-509 의 2 개소	D = 450 %, L = 50 m	85. 11. 30	중 량	"
33	도봉구수유 5 동 440 주변	D = 350 %, L = 130 m	85. 12. 29	"	"
34	" 쌍문동 414-269-417-9	D = 450 %, L = 350 m	85. 6. 30	"	"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월일	배 수 구 역	구 별
35	도봉구 선릉동 73 의 1 개소	D = 600 %, L = 100 m	85. 5.29	중 량	합류식
36	도봉구 1 동 437 의 2 개소	D = 600 %, L = 75 m D = 700 %, L = 90 m 압거 (2.0 × 1.5 m - 1 련) L = 2.1m	85. 6.12		
37	도봉구 수유 3 동 233-5 의 1 개소	D = 450 %, L = 110 m D = 600 %, L = 105 m	85. 5.30		
38	도봉구 수유 5 동 409-2- 410-216	D = 600 %, L = 235 m	85. 6. 7		
39	도봉구 미아동 95-2 의 3 개소	D = 450 %, L = 317.5 m D = 600 %, L = 100 m D = 800 %, L = 67.5 m	85. 6.20	청 제	
40	도봉구 창동 608-167-186	D = 450 %, L = 42.5 m	85. 6. 5	중 량	
41	쌍문동 471-30-21	D = 600 %, L = 72 m	85.11.23		

구 공 고

◎ 관악구공고제 92 호

동관인 개각사 용승인공고













우리구 봉천분공의 4 개동 일반사
무용 직인 및 민원사무 전용 직인.
제인용 개각 사용 승인하고, 구관인
및 제인용 동일자로 폐기하였기 서



공공청사 관인규칙 제 6 조 규정에
의해 공고함.

1986. 9. 2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개 상 동 : 봉천분동, 2, 5, 8 동,
신림 4 동
2. 사용개시 : 86.9.22(월) 09:00
3. 제인일시 : 86.9.20(토) 13:00
4. 관인의인영 : 별 첨

공 인 의 인 영				
구 분	관 인	개 자	관 인	개 자
인 영				
공인명	봉천본동계인 (일반사무용)	봉천본동계인 (일반사무용)	봉천본동계인 (민원사무용)	봉천본동계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봉천제 2 동계인 (민원사무용)	봉천제 2 동계인 (민원사무용)	봉천제 6 동계인 (민원사무용)	봉천제 6 동계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봉천제 8 동계인 (일반사무용)	봉천제 8 동계인 (일반사무용)	봉천제 8 동계인 (민원사무용)	봉천제 8 동계인 (민원사무용)

구분	관 인 개 각		
인 영			<p>한다.</p> <p>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p> <p>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산업경제국장시 대행한다.</p> <p>⑤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두되 농축과장으로 한다.</p>
공인명	신립제 4 동지인 (민원사무용)	신립제 4 동지인 (민원사무용)	<p>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농지전용 억제정책을 위한 준칙 (농수산부 훈령 제 61 호) 제 4 조에 정한 기준에 따른 조과사항으로서 산청의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산청군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사항</p> <p>2. 서울특별시 농지보전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p> <p>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예 규</div>			
<p>◎ 서울특별시예규제 483 호</p>			
<p>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p>			
<p>제 1 조 (목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5 조와 다른 법률의 규정과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협의 승인에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p> <p>②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환경독지국장으로서</p> <p>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농지전용 억제정책을 위한 준칙 (농수산부 훈령 제 61 호) 제 4 조에 정한 기준에 따른 조과사항으로서 산청의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산청군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사항</p> <p>2. 서울특별시 농지보전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p> <p>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 4 조 (회의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2 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제 5 조 (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에 의</p>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의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86년 9월 20일

령제 411 호

성 명	발령부서	직 위 (호봉)	직	비 고
최혁균	전자계산소	전산처리사(1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신 규

◎ 1986년 9월 18일

령제 412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서	직 급
송혜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시립정신병원	지방별정직 7급상당
강영욱	"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 1986년 9월 17일

령제 415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서	직 급
신동우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 ('86.9.17- 별도지시시까지)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1. 다음과 같이 해외훈련 파견 명령하였기 통보함
 가. 해외훈련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년령	학 력	경력	기 간	교육이수사항		성 적
							과 정	교육기관	
영등포구 수도공사와	지방토목 기사보	유연환	33	충주 공전출	6-6	'86.5.6 -6.7 (5주)	제1기통합 상도반	건설공무원 교육원	95.7

나. 훈련 내용				
훈련과정	훈련 목적	훈련기간	훈련국	훈련내용
상수도해의 기술훈련	상수도분야 최신시설 유지기법 연수	'86.9.20 -10.10 (21일간)	프랑스,이태리	IFRD 차관자금 (건설부 부담)
시 울 특 별 시 장				